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746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주현빈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박아현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고민삼 4.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5.부터,

나. 피고 C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부터,

다. 피고 주식회사 D는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라. 피고 주식회사 E은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6.부터

각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F'이라는 제목의 희곡 저작물(이하 '이 사건 희곡'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G'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희곡과 일부 대사만 상이할 뿐 극의 구조부터 전체적인 줄거리, 각 에피소드, 갈등의 심화와 해소 과정, 등장인물까지 동일한 대본인 'G'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127,000,000원(= 총 공연일 254일 × 1일 공연일 마다 50만 원 손해), 피고 C은 46,000,000원(= 총 공연일 92일 × 1일 공연일 마다 50만 원 손해), 피고 주식회사 D는 46,500,000원(= 총 공연일 93일 ×



1일 공연일 마다 50만 원 손해), 피고 주식회사 E은 20,500,000원(= 총 공연일 41일 × 1일 공연일 마다 50만 원 손해)과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사건 희곡을 각색한 대본과 아래 표와 같이 각 날짜, 장소에서 녹취한 공연의 각 녹취록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녹취일	녹취장소	관련자
1	2023. 1. 11.	H	I, J
2	2020. 1. 11.	K	I, L
3	2023. 1. 14.	M	I, N

나. 그러나 을나 1부터 7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희곡과 이 사건 희곡을 각색본의 내용이 일정 부분 상이한데, 위 감정 결과는 원고가 저작권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희곡이 아닌 이 사건 희곡의 각색본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희곡은 O이 원저작자인데, 이 사건 희곡이 P의 원작 'Q'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들이 공연한 'G'라는 연극 또한 이 사건 희곡이 아닌 'Q' 또는 I가 이 사건 희곡에 앞서 작성하였던 'R' 등에 따라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 C, 피고들의 대표이사, I를 상대로 원고의 저작권권인 이 사건 희곡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24. 7. 4. 피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는 2024. 8. 29. 항고기각결정을 한 점, ④ 원고는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



판부는 2025. 8. 12.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이 사건 희곡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병준